



X

n

A



# Q ??

## 동성 성행위가 사회에 해를 주는 것이 없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할 자유를 가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성 성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성행위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성간의 동성 성행위는 HIV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sup>AIDS</sup> 감염이 보고되기 전인 1978년에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게이)의 75%가 평생 동안 100명 이상의 남성 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75%의 남성 동성애자들의 구성 비율



# A

들을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5%는 100명에서 24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17%는 250명에서 4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15%는 500명에서 9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 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미국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AIDS 감염경로로 ‘남성간 성관계’의 경우가 6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같은 해에 13-24세의 신규 AIDS 감염자의 84%가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조사에 따르면 서부·중부유럽과 북미 에이즈 신규 감염자 중 남성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인 남성이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에서 밝힌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HIV 신규 감염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신규 감염환

자가 약 20배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HIV감염 환자의 급증은 청소년 간의 동성애 확산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HIV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AIDS의 확산은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AIDS는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sup>KCDC</sup>에서 관리하는 제3군감염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IDS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

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AIDS 진료비용의 환자 부담비는 없습니다. AIDS 치료비용은 모든 국민들이 분담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DS 환자 치료비는 2006년부터 11년간 5,415억원이 들었고, 2016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소모됐다고 합니다. AIDS 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치료비용도 매년 증가하게 되고, 그 비용은 모든 국민의 혈세로 충당 되는 것입니다.

Q

##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나요?

‘동성애 내지 동성 간 성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성적 지향의 법적·제도적 보장’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법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한 적이 없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당장이라도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고용, 사회복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어온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

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동성애와 동성 혼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 논의, 토론이 금지 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표현은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치료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실제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인권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동성애 측에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대학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논문에서는 미션스쿨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는 표현에 대하여 학교당국의 게시물을 ‘증오선동의 혐오표현’ 또는 ‘차별’

이라고 설명했고,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판단 및 의학적·사회적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입법된다는 것은 단순히 ‘차별의 금지’라는 의미를 넘어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동성애를 국가가 옳은 행위로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되어, 반사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 특히,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가 금지되거나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거꾸로 올바른 성윤리의 회복과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A